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방공사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인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제1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지방공사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과 일치 필요 (안 제60조제3항)
 - 안 제60조제1항제3호는 지방공사의 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¹⁾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1)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있고, 안 제60조제3항은 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의 사유로 규정해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0조제1항2)은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제60조제2항3)은 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4)는 당연퇴직 사유를 제31조에

-
-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4)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따른 결격사유로 하되 단서 규정을 두어 그 중 일부를 제외하여
공무담임권을 보다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공사 임직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당연퇴직사유를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제60조제2항과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인
제61조제1호를 인용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
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제60조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정안	수 정 의 견
제60조(임직원의 결 격사유)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거나 임명 당 시 그에 해당하였음 이 판명되었을 때에 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0조(임직원의 결 격사유)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임직원의 결 격사유 등) ② -----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제3호 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 1조제1호에----- ----- ----- ----- -----.
<신 설>	③ 공사의 직원이 제 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 에 해당하였음이 판 명되었을 때에는 당	③ -----「지 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에----- ----- -----

현 행	개정안	수 정 의 견
	연히 퇴직한다.	----- ---

- 그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기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을 규정한 조항에 범죄경력조회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조의 제목이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